

1. 개정 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법령정비 개선의견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필요성 등에 따라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사업(안 제4조)

: 부과대상인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안 제3조)

: 부과대상면적을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 산정 면적으로 명확히 규정

다. 개발비용의 산정·확인 의뢰시 유의사항(안 제13조)

: 부과징수권자가 개발비용산정기관으로부터 청구하는 서류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다만, 영 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부과대상면적”을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으로 한다.

제11조의7제1항제1호 중 “제7호”를 “제80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9호”를 “제72호”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17호”를 “제23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제22호”를 “제76호”로, 같은 항 제5호 중 “제36호”를 “제43호”로, 같은 항 제6호 중 “제38호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제62호의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제41호”를 “제79호”로, 같은 항 제8호 중 “제53호”를 “제2호”로, 같은 항 제9호 중 “제55호”를 “제26호”로, 같은 항 제10호 중 “제57호”를 “제28호”로, “제76조”를 “제91조”로, 같은 항 제11호 중 “제59호”를 “제29호”로, 같은 항 제12호 중 “제70호”를 “제39호”로, 같은 항 제13호 중 “제82호”를 “제87호”로, 같은 항 “제91호”를 “제14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부과징수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의3 중 "위임수수료"를 "징수수료"로, "영 제28조제5항에 의한 위임수수료"를 "영 제3조제6항에 의한 징수수료"로 한다.

제19조 중 "위임사항의 처리보고"를 "부과·징수 실적 등의 보고"로, "영 제28조제4항"을 "영 제3조제5항"으로, "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를 "규칙 제2조의2 별지 제1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과대상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은 영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u>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u>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u>재개발사업(다만, 영 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재건축사업</u>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제3조(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에 따른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에 따른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토지형질변경허가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면적에 도로용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u>부과대상면적에서</u> 이를 제외	4. 토지형질변경허가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면적에 도로용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u>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u>

한다.

5. (생 략)

제11조의7(부담금 납부액의 산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의 부담금 중 당해 토지개발사
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담금은 법 제11조에 따
른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1. 제7호의 학교용지부담금(학
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조)
2. 제9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의 수익자 부담금(지방자
치법 제138조)
3. 제17호의 농지보전부담금(농
지법 제38조)
4. 제22호의 대체초지조성비(초
지법 제23조)
5. 제36호의 수도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71조)
6. 제38호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7. 제41호의 하수도 원인자부담

의 산정 면적에서 이를 제외
한다.

5. (현행과 같음)

제11조의7(부담금 납부액의 산정)

① -----

-----.

1. 제80호의 학교용지부담금(학
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조)
2. 제72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의 수익자 부담금(지방자
치법 제138조)
3. 제23호의 농지보전부담금(농
지법 제38조)
4. 제76호의 대체초지조성비(초
지법 제23조)
5. 제43호의 수도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71조)
6. 제62호의 생태계보전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7. 제79호의 하수도 원인자부담

금(하수도법 제61조)	금(하수도법 제61조)
8. 제53호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8.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9. 제55호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9. 제26호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0. 제57호의 도로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제76조)	10. 제28호의 도로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제91조)
11. 제59호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제58조)	11. 제29호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제58조)
12. 제70호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12. 제39호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13. 제82호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3. 제87호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4. 제91호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14. 제14호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3조(개발비용의 산정·확인 의뢰시 유의사항) ①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을 의뢰하고	제13조(개발비용의 산정·확인 의뢰시 유의사항) ①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을 의뢰하고

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본 1부

3. ~ 9. (생략)

제18조의3(위임수수료의 우선 사용) 영 제28조제5항에 의한 위임수수료는 여비, 감정평가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에 따른 수수료, 개발비용산정 확인 용역비, 변호사 수임료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제19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분기별

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징수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9.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징수수수료의 우선 사용) 영 제3조제6항에 의한 징수수수료는 여비, 감정평가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에 따른 수수료, 개발비용산정 확인 용역비, 변호사 수임료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제19조(부과·징수 실적 등의 보고)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분기

로 <u>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u> 서식에 따라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결손처분) ① 체납자에게 법 제23조제1항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별로 <u>규칙 제2조의2 별지 제1호</u> 서식에 따라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결손처분) ① 체납자에게 법 제23조제1항 <u>각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	---